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61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12일

발 의 자 : 김인제 의원(1명)

찬 성 자 : 김경우, 김기대, 김제리,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양민규, 장상기, 홍성룡,
황규복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자치법규 입안 시 일본식 용어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자치법규 입안 작성 원칙에 관한 것으로,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치법규에 관한 문서는 공문서 중 법규문서에 해당하여 같은 영 제7조의 ‘문서 작성의 일반원칙’에 따라 문서 작성을 하여야 하나 같은 조항에서는 일본식 표현·어투 등의 용어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자치법규 입안 작성 원칙에 관한 사항은 조례·규칙 제·개정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점(「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나목)을 고려해,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 입안시 일본식 표현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명문화 하고 입안 시 우리말 사용을 한층 장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자치법규 입법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도록 명문화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사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사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본 원칙) ①·② (생략)</p> <p>③ 자치법규의 입법은 이해하기 쉬우면서 뚜렷한 뜻을 가진 단어와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u>사용</u>하여야 한다.</p>	<p>제3조(기본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사용하여야 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사용</u>----</p>